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도급수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정시험수수료 및 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조항 삭제(안 제8조 2항)
- 나.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조항 삭제(안 제10조 1항)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문안 변경 (안 제11조 1항)
- 라.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는 규정 신설(안 제17조 3항)
- 마. 안제17조3항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경우 가구별로 계량기 설치 할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7조 4항)
- 바. 업종을 달리하는 2개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 업종으로 적용 변경(안 제 29조 2항)
- 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범음식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각 50%, 30% 상수도사용료 감면토록 조항 별도 체계화 신설 (안 제37조 1항)
- 자. 수용가 수도사용금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누수등으로 과다 부과된 사실 및 누수 지점수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시 부과금액 감면 조항을 신설(안제37조3항)
- 카. 수도계량기의 기물 훼손 망실에 대하여 동파 조항 삽입(안 제4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4-184호(2004. 5. 8)

마.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교부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 : 10,000원
2. 갱신 1건 : 10,000원

제10조제1항중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수도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를 “급수신청자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제1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7조 제2항중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높은 요율”로 한다

제2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산정한다.

제29조 제3항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가 공익 또는 기타 사유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0% 감면한다.
2. 모범음식점은 30% 감면한다.
3. 양로원, 보육원, 경로당, 노인회관, 영·유아원, 유치원 등은 30% 감면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례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와 동 조례 제44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사용수량의 인정 또는 누수 등으로 과다 부과된 금액이 확인되고 누수 지점 수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누수발생 당해 월의 사용료는 누수발생 직전 3개월 사용료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다 (단 군수로부터 옥내 누수 사실을 서면통보 받고도 정비 수리를 15일 이상 하지 아니한 자는 사용량을 전액 부과 징수하며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단수 및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제2항중 “수수료”를 “계량기 설치비”로 한다

제41조중 “훼손” 다음에 “(동파포함)”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p> <p>①---(현행과 같음)----- 준공 검사 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삭제) -----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p> <p>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에 대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④(생략)</p>	<p>제11조(공사비의 선납)</p> <p>①--(현행과 같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생략)</p> <p>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④(생략)</p>	<p>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 3년----- --(현행과 같음)----- ----- ③--(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생략) ②제2항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u>수도 사용자가 원하는 곳으로</u> 정하되 검침이 용이한 곳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생략) ②----- 급수신청자와 협의하 여 ----- (현행과 같음)----- ③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건축물(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1개의 계량기 를 설치하여 계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주체를 두지 아니하는 공동주택등의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 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생략)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 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u>사용량이 많은</u> <u>업종의 효율을</u> 적용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 <u>높은 효율</u> 업종을 적용한다		
제29조(사용수량 인정) ①(생략) ②1개의 수도계량기로 <u>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u> <u>이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u> <u>정 한다</u>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5㎡를 합산한 양 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로하고 다른 업종은 그 잔여량을 사용량 으로 하며, 잔여량에 기본량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량을 사용량 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10㎡)을 합산 한 양 보다 많고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으로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기본량을 합산한 양 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정용은 가구당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별표 2의 해당 기 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u>가정용 2종에만</u> 해당하는 가구 이상이 사용할 때의 각 가구별 사용량은 총사용량에 사용가 구수를 나눈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 는 가구를 말한다 ④(생략)		제29조(사용수량 인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u>가정용</u> --- --(현행과 같음)----- <u>높은 효율의 업종으로</u> 산정한다 1.(삭제)  2.(삭제)  3.(삭제)  ③ --(현행과 같음)----- ----- <u>가정용</u> --- (현행과 같음)--- ----- ----- ④--(현행과 같음)		
제40조(정수처분)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계량기 설치비를 징수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u>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u> 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 등에 대한 책임) --(현행과 같음) ----- <u>훼손(동파포함)하였거</u> 나--(현행과 같음) ----- -----		

#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제23조(공급규정)

일반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